

유니세프 이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년 4월 24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4.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)

□ 제안이유

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 운영규약이 회원 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·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

- 나.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(제1조)
- 다.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(제4조)
- 라.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(제12조)
- 마.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
지자체 세입·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(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, 제158조
- 나. 운영규약 변경내역 및 개정 규약(동의안 참조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및 같은 법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조항에 근거하여 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의 규약 개정에 따른 지방협의회의 사전동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임
- 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최신 동향을 상호 공유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구성되었으며,
- 현재 서울의 23개 지자체(서초, 동작, 중랑 제외)를 비롯한 전국 총 8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, 강서구도 2015년 7월 협의회 구성시 최초 가입한 상태임

- 운영규약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
 - 안 제4조(임원 및 조직)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함
 - 안 제12조(경비의 부담 및 사용)에서는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와 부담금 사용 기준을 명시하였으며
 - 안 제13조(회계 및 결산)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
-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등 「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」의 규약 개정에 따라
-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본 규약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